

전과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교학생의 소속학과(부) 변경(이하 "전과(轉科)"라 한다)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전과의 시기) 전과는 재학기간 중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개시 전, 편입생은 3학년 2학기 개시 전 1회에 한하여 당해학과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.

제3조 (조건) 전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허가한다.

1.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또는 2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2.50 이상이어야 한다.(단, 전공과목을 이수하기에 불가능한 신체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2. 예능계열의 학과는 전과 및 전공변경이 가능하다.
3. 편입생의 경우 3학년 1학기 편입학한 학과의 취득기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4조 (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과할 수 없다.

1.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

제5조 (절차) ① 전과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학기 개시 전에 학과별 예정인원과 접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장과 전입할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 전입할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전입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형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.

③ 전입생의 학과장은 전형을 거쳐 전과 허가자를 결정한 후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.

제6조 (학점이수) ① 전과생은 전입학과의 전입학년 이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전과 전 선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7조 (재학연한) 전과한 자의 재학 연한은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